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18가단50214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준희

피 고 B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와이

담당변호사 육현창, 박정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인성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200,000원 및 그 중 108,1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7,1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4.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원고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별지 표의 ‘피보험자’란 기재 피보험자들(이하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에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mbler Therapy)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피보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 합계 11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4호증 내지 1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임의 비급여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신의료기술인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고시’(이하 ‘신의료기술 평가고시’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대상이 “기존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환자”에 한정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치료행위는 임의 비급여 진료에 해당한다. 피고 소속 의사들은 신의료기술 평가고시의 사용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들에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을 실시하였고, 이는 임의 비급여진료에 해당한다.

피고가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보험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고,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대상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법정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며, 피보험자들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도 아니어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보험금 상당액 11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자라고 볼 수 없으며,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3. 판단

설령 피보험자가 위법한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그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진료행위가 무효이고, 동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상 그 진료행위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채권을 갖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보전하려는 권리인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인데,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자력 유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증거들,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피보전권리의 현실적인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그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피고는 원고가 아닌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피보험자들과의 진료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위 진료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보험계약상 특별약관의 해석 등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즉,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피고의 진료행위를 두고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대위권리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는 등으로 양자 사이에 법률상·계약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로서는 피보험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채권자대위권에서 말하는 ‘보전의 필요성’이란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채권자의 채권회수의 편의를 위한 경우는 위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피보험자들에 대한 개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집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이 다수의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하나의 요양기관을 상대로 피대위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은 환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합계가 다액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는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의 경과 및 결과, 원고로부터 환수된 보험금의 액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은 피보험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터이니 원고가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

⑤ 원고가 피보험자들로부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별 지]

순번	피보험자	진료구분	진료시기	진료종가	비정속적 무보험 진료요율		근거자료
					횟수	총 비용/보험금	
1		입원	2015-06-10	2015-06-27	4	400,000	갑 제 5 호증
2		입원	2015-06-15	2015-07-02	1	100,000	갑 제 6 호증
3		입원	2015-06-23	2015-07-11	10	1,000,000	갑 제 7 호증
4		입원	2015-07-24	2015-08-11	9	900,000	갑 제 8 호증
5		입원	2015-08-05	2015-08-22	9	900,000	갑 제 9 호증
6		통원	2015-08-24	2015-08-24	1	100,000	갑 제 10 호증
7		입원	2015-08-26	2015-09-14	7	700,000	갑 제 11 호증
8		입원	2015-08-28	2015-09-14	10	1,000,000	갑 제 12 호증
9		입원	2015-08-31	2015-09-21	3	800,000	갑 제 13 호증
10		입원	2015-09-18	2015-10-05	10	1,000,000	갑 제 14 호증
11		입원	2015-09-25	2015-10-12	8	800,000	갑 제 15 호증
12		입원	2015-09-24	2015-10-12	9	900,000	갑 제 16 호증
13		입원	2015-10-17	2015-10-25	2	200,000	갑 제 17 호증
14		입원	2015-10-13	2015-10-31	7	700,000	갑 제 18 호증
15		입원	2015-10-06	2015-10-26	11	1,100,000	갑 제 19 호증
16		입원	2015-10-19	2015-11-07	12	1,200,000	갑 제 20 호증
17		입원	2015-10-23	2015-11-09	10	1,000,000	갑 제 21 호증
18		입원	2015-11-05	2015-11-25	11	1,100,000	갑 제 22 호증
19		입원	2015-12-17	2016-01-06	12	1,200,000	갑 제 23 호증
20		입원	2015-12-07	2015-12-29	8	800,000	갑 제 24 호증
21		입원	2016-01-21	2016-02-10	10	1,000,000	갑 제 25 호증
22		입원	2016-01-25	2016-02-12	10	1,000,000	갑 제 26 호증
23		입원	2016-02-02	2016-02-15	3	300,000	갑 제 27 호증
24		입원	2016-02-15	2016-02-23	3	300,000	갑 제 28 호증
25		입원	2016-03-14	2016-04-01	10	1,000,000	갑 제 29 호증
26		입원	2016-03-22	2016-04-09	10	1,000,000	갑 제 30 호증
27		입원	2016-04-27	2016-05-13	7	700,000	갑 제 31 호증
28		입원	2016-04-27	2016-05-13	6	600,000	갑 제 32 호증
29		입원	2016-04-26	2016-05-12	7	700,000	갑 제 33 호증
30		입원	2016-04-26	2016-05-12	7	700,000	갑 제 34 호증
31		입원	2016-04-29	2016-05-17	10	1,000,000	갑 제 35 호증
32		입원	2016-05-17	2016-06-01	7	700,000	갑 제 36 호증
33		입원	2016-04-30	2016-05-16	9	900,000	갑 제 37 호증
34		입원	2016-05-30	2016-06-16	7	700,000	갑 제 38 호증
35		입원	2016-06-06	2016-06-21	9	900,000	갑 제 39 호증
36		입원	2016-06-15	2016-07-02	10	1,000,000	갑 제 40 호증
37		입원	2016-06-27	2016-07-13	5	500,000	갑 제 41 호증
38		입원	2016-03-22	2016-04-04	4	400,000	갑 제 42 호증
39		입원	2016-06-22	2016-07-09	5	500,000	갑 제 43 호증
40		입원	2016-07-04	2016-07-21	5	500,000	갑 제 44 호증
41		입원	2016-07-15	2016-08-01	14	1,400,000	갑 제 45 호증
42		입원	2016-07-15	2016-08-01	15	1,500,000	갑 제 46 호증
43		입원	2016-07-13	2016-07-29	5	500,000	갑 제 47 호증
44		입원	2016-07-18	2016-08-05	10	1,000,000	갑 제 48 호증
45		입원	2016-07-20	2016-08-08	12	1,200,000	갑 제 49 호증
46		입원	2016-09-12	2016-09-30	10	1,000,000	갑 제 50 호증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순번	파보환자	진료구분	진료시기	진료종가	횟수	총 비용/보험금
47		입원	2016-08-29	2016-08-30	1	100,000
48		입원	2016-10-12	2016-10-25	1	100,000
49		입원	2016-10-14	2016-11-01	10	1,000,000
50		입원	2016-10-20	2016-11-03	3	300,000
51		입원	2016-10-07	2016-10-25	10	1,000,000
52		입원	2016-11-08	2016-11-21	9	900,000
53		입원	2016-10-27	2016-11-14	9	900,000
54		입원	2016-11-07	2016-11-21	7	700,000
55		입원	2016-11-08	2016-11-26	10	1,000,000
56		입원	2016-11-29	2016-12-17	10	1,000,000
57		입원	2016-12-02	2016-12-20	10	1,000,000
58		입원	2016-09-13	2016-09-28	6	600,000
59		입원	2016-12-19	2017-01-03	1	100,000
60		입원	2016-12-17	2016-12-31	1	100,000
61		입원	2016-12-26	2017-01-09	5	500,000
62		입원	2017-01-02	2017-01-16	5	500,000
63		입원	2016-12-26	2017-01-14	11	1,100,000
64		입원	2016-12-26	2017-01-17	10	1,000,000
65		입원	2017-01-16	2017-01-31	3	300,000
66		입원	2017-01-17	2017-02-02	10	1,000,000
67		입원	2017-01-23	2017-02-06	7	700,000
68		입원	2017-01-23	2017-02-10	10	1,000,000
69		입원	2017-01-27	2017-02-13	10	1,000,000
70		입원	2017-01-25	2017-02-11	10	1,000,000
71		입원	2017-01-12	2017-01-30	10	1,000,000
72		입원	2017-02-03	2017-02-21	10	1,000,000
73		입원	2017-02-10	2017-02-22	2	200,000
74		입원	2017-02-14	2017-03-04	10	1,000,000
75		입원	2017-01-02	2017-01-20	10	1,000,000
76		입원	2017-02-21	2017-03-11	10	1,000,000
77		입원	2017-03-03	2017-03-21	10	1,000,000
78		입원	2017-03-06	2017-03-27	12	1,200,000
79		입원	2017-03-10	2017-03-23	1	100,000
		입원	2016-11-24	2016-12-09	1	100,000
80		입원	2017-03-16	2017-04-03	7	700,000
81		입원	2017-03-20	2017-04-10	6	600,000
82		입원	2017-03-21	2017-04-10	13	1,300,000
83		입원	2017-03-06	2017-03-24	12	1,200,000
84		입원	2017-03-28	2017-04-17	12	1,200,000
85		입원	2017-03-28	2017-04-17	12	1,200,000
86		입원	2017-04-07	2017-04-22	5	500,000
87		입원	2017-04-10	2017-04-24	3	300,000
88		입원	2017-04-20	2017-05-08	10	1,000,000
89		입원	2017-04-17	2017-05-08	12	1,200,000
90		입원	2017-04-17	2017-05-08	15	1,500,000
91		입원	2017-04-20	2017-05-10	12	1,200,000

연도	피보탈자	진료구분	진료시기	진료종가	비침습적 무통증 치료요법		근거자료
					횟수	총 비용/보령금	
92		임원	2017-05-04	2017-05-15	2	200,000	갑 제 97 호증
93		임원	2017-05-04	2017-05-17	3	300,000	갑 제 98 호증
94		임원	2017-05-01	2017-05-22	3	300,000	갑 제 99 호증
95		임원	2017-04-27	2017-05-17	13	1,300,000	갑 제 100 호증
96		임원	2016-09-03	2016-09-21	10	1,000,000	갑 제 101 호증
97		임원	2017-05-04	2017-05-24	11	1,100,000	갑 제 102 호증
98		임원	2017-05-06	2017-05-26	6	600,000	갑 제 103 호증
99		임원	2017-05-10	2017-05-23	4	400,000	갑 제 104 호증
100		임원	2017-05-25	2017-05-31	1	100,000	갑 제 105 호증
101		임원	2017-04-25	2017-05-15	12	1,200,000	갑 제 106 호증
102		임원	2017-05-22	2017-06-05	5	500,000	갑 제 107 호증
103		임원	2017-05-22	2017-06-12	13	1,300,000	갑 제 108 호증
104		임원	2017-05-23	2017-06-13	10	1,000,000	갑 제 109 호증
105		임원	2017-05-27	2017-06-15	11	1,100,000	갑 제 110 호증
106		임원	2017-05-22	2017-06-03	8	800,000	갑 제 111 호증
107		임원	2017-05-30	2017-06-12	5	500,000	갑 제 112 호증
108		임원	2017-06-02	2017-06-22	10	1,000,000	갑 제 113 호증
109		임원	2017-06-26	2017-06-10	5	500,000	갑 제 114 호증
110		임원	2017-06-07	2017-06-26	10	1,000,000	갑 제 115 호증
111		임원	2017-06-24	2017-06-13	12	1,200,000	갑 제 116 호증
112		임원	2017-06-30	2017-07-19	6	600,000	갑 제 117 호증
113		임원	2017-04-21	2017-05-11	12	1,200,000	갑 제 118 호증
114		임원	2017-06-30	2017-07-19	10	1,000,000	갑 제 119 호증
115		임원	2017-07-07	2017-07-20	4	400,000	갑 제 120 호증
116		임원	2017-07-10	2017-07-31	13	1,300,000	갑 제 121 호증
117		임원	2017-07-18	2017-08-07	12	1,200,000	갑 제 122 호증
118		임원	2017-07-10	2017-07-29	10	1,000,000	갑 제 123 호증
119		임원	2017-07-18	2017-08-05	14	1,400,000	갑 제 124 호증
120		임원	2017-07-24	2017-08-14	13	1,300,000	갑 제 125 호증
121		임원	2017-07-26	2017-08-07	4	400,000	갑 제 126 호증
122		임원	2017-07-31	2017-08-21	9	900,000	갑 제 127 호증
123		임원	2017-08-14	2017-09-04	13	1,300,000	갑 제 128 호증
124		임원	2017-03-09	2017-03-27	10	1,000,000	갑 제 129 호증
125		임원	2017-08-24	2017-09-13	13	1,300,000	갑 제 130 호증
126		임원	2017-08-22	2017-09-11	14	1,400,000	갑 제 131 호증
127		임원	2017-10-26	2017-11-09	3	300,000	갑 제 132 호증
128		임원	2017-09-27	2017-10-16	10	1,000,000	갑 제 133 호증
129		임원	2017-10-27	2017-11-22	6	600,000	갑 제 134 호증
130		임원	2017-09-28	2017-10-07	2	200,000	갑 제 135 호증
131		통원	2017-11-16	2017-11-16	1	100,000	갑 제 136 호증
132		임원	2017-09-26	2017-10-10	3	300,000	갑 제 137 호증
133		임원	2017-09-27	2017-10-16	10	1,000,000	갑 제 138 호증
134		임원	2018-01-30	2018-02-19	12	1,200,000	갑 제 139 호증
135		임원	2017-12-01	2017-12-19	10	1,000,000	갑 제 140 호증
136		임원	2017-08-02	2017-08-16	5	500,000	갑 제 141 호증
137		임원	2017-12-15	2018-01-02	10	1,000,000	갑 제 142 호증

3

					비정승적 무통증 실효요법		
순번	피보환자	진료구분	진료시각	진료종가	횟수	총 비용/보행금	근거자료
138		입원	2017-12-04	2017-12-18	5	500,000	갑 제 143 호증
139		입원	2017-12-12	2018-01-02	14	1,400,000	갑 제 144 호증
140		입원	2017-12-29	2018-01-18	10	1,000,000	갑 제 145 호증
141		입원	2018-01-23	2018-02-12	5	500,000	갑 제 146 호증
					합계	115,200,000	

